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2022-10-06

대구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9가단106955 판 결 손해배상(기)

법 원 대 방 구 지

판 결

사건 2019가단10695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권

피고 1. B

2. C

3.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0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변론종결 2020. 12. 11.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중 '손해배상금'란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중 '기산일'란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일자부터 각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500,00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 1) 피고 B은 2016. 5. 4. W에 접속하여 개인방송을 하던 중 원고가 사용하는 닉네임 X를 지칭하며 채팅 창에 '지가 지무덤 파는거야 병신새끼가 잘 몰라 임마 이 새끼는 법에 대해서 좆도 모르는 새끼야 이거뭐 50만원짜리 이런 것만 해봤지', '병신새끼', 'X 같은 새끼', '존만한 딱따구리도 니같이 안살어' 라는 등으로 말하여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16. 9. 2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6고약3666).
- 2) 피고 B은 2016. 5. 17. 위 W에 접속하여 개인방송을 하면서 원고가 사용하는 닉네임 X를 지칭하며 채팅창에 '관종이에요', 'Y라고 있어 씨발 X 있어', '맨날 고소 고소하는 새끼 있어', '병신새끼가 하나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16. 11. 17.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6고약4471).

나. 피고 C

피고 C은 2017. 9. 27. 'Z'이란 닉네임으로 원고가 방송 중인 AA 'AB'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안령하세요 중국사라미에요 치발험아 곱빼기 데스까? 유언피료해요 개자스 가 시자스가 스자스가 부랄탕탕 포도부랄 사우자 미안해요 ○○련아"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18. 4. 16.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8고약409).

다. 피고 D

피고 D는 2017. 10. 18. 'AC'이란 닉네임으로 원고가 방송 중인 AA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이런 얼굴도 사는데 용기를 얻고 열심히 해야지. AD 결혼도 못하고 씨도 못 뿌리고, AD 죽어서 관에 들어가서도 신고할 기세네. 인생 좆망이구만, 합의금 좀 뜯어 내면서 산다는데"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7. 13.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8고

약 7440).

라. 피고 E

피고 E은 2017. 11. 1. 'AE'란 닉네임으로 원고가 방송 중인 AA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이색기 아직도 한심하게 사네 쥔나 日 윰 같네 자랄을 떠네 븅신 → → 나잇값 쥔 나 못해 키 니색기 입으로만 나불대는 건 여기 사람들 다 알걸? 크 키 이븅신 대륙에 서도 깝치드만 AF때부터 쥔나 븅신같앗는데 여전하네 나이값하고 인생 좀 똑바로 살아라 븅신아 알겠냐"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 원으로부터 2018. 1. 15.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7고익11371).

마. 피고 F

피고 F은 2017. 10. 18. 'AG'이란 닉네임으로 원고가 방송 중인 AA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신고충 개10색히네 으이구 이언게 먼방송이 고, 치타야 방파라 ~~~~~이색히 역겹다"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18. 6. 15.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8고약1840).

바. 피고 G

피고 G는 2018. 2. 4. 'AH'란 닉네임으로 원고가 방송 중인 AA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00 절대 고소 못한다 찌질이 절라디언이라서", "내 좀 고소하고 함보자 띱때야","나 고소해라이 10때끼야", "찌질아... 불쌍하다 AD 말라꼬 사노?", "제발 나 좀 고소해 라고 쉰아", "고소장 안오면 방송접어라고... 대답해라 띱때야"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18. 6. 15.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8고약2099).

사. 피고 H

피고 H는 2017. 10. 18. 'H'란 닉네임으로 원고가 방송 중인 AA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그냥 쓰레기였네요", "정신병자같은 소리 그만하고", "쓰레기"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11, 11.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6고약16133). 아. 피고 I

피고 I은 2017. 10. 20. 'Al'란 닉네임으로 원고가 방송 중인 AA에 접속하여 시청하던 중 원고가 "어그로 끌지마"라고 말하자 화가 나 전화로 원고에게 "이 시발놈아 꼬면 너도 욕해봐 아 좆나 어이 없네 야 너 대구 어디야 새끼야 가줄게 니도 시발새끼 야 경찰 믿고 두다리 쭉 뻗은 새낀가본데 좆만한게 새끼야 개새끼야 생긴것도 어따 행 자 같은 새끼가 시발놈이(생략)"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5. 11.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2018고약 3546).

자. 피고 [

피고 J는 2017. 10. 23. 원고가 방송 중인 AA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AD 그놈은 원래 미친놈임, 가오잡고 고기만 쳐먹는 놈임, W도 퇴출 보고 있음 月 겁나 멸치 같은 놈이 가오 잡다가 암말도 못함 = AD 불쌍한 정신병자임, 돈도 없는 등신임 어떻게 할 것도 없음. AD거지"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2018. 1. 26.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7고약13070).

차. 피고 K

피고 K은 2018. 1. 31, 'AJ'란 닉네임으로 원고가 방송 중인 AA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시벌럼이, 멀가

시-발아, 뭘 자꾸보재 티스이 듣기나 해 시발람아, 노래틀어달라고 시봉새야, 뭘나가 시-발아 까 고소충이네 완전시-발"이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5. 18.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8고약4264).

카. 피고 L

피고 L은 2017. 11. 3. 'AK'란 닉네임으로 원고가 방송 중인 AA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믄슨개작식형사놀이하고처있네"라고 게시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2018. 2. 8.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8고익172).

타. 피고 M

피고 M는 2017. 10. 10. 'AL'란 닉네임으로 원고가 방송 중인 AA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지냑약하노 평신 비제이님 언제부터 찌질했나요? 하긴 그렇게 찌질하 니 그 나이에 그런 인생이겠지만, 비제이 AD씨새기 짤풍 모아서 술 쳐먹다가 암걸려 디지삼"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4. 6.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8고약2436).

파. 피고 N

피고 N은 2017. 10. 23. 'AM'이란 닉네임으로 원고가 방송 중인 AA에 접속하여 시청하는 과정에서 휴대 전화로 "그냥 좁밥입니다 검사님"라고 발언하여 당시 위 방송을 함께 시청 중이던 약 270여명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2018. 1. 12.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7고익5977).

하. 피고 0

피고 0은 2017. 11. 13. 'AN'란 닉네임으로 원고가 방송 중인 AA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 이병-신새-끼크 크 고소한다고 어그로 존-나끌더만 븅-신세-끼키크 나 이쳐먹고 답이 없네키"라는 글을 20여회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1. 2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7고익26779).

거. 피고 P

피고 P(AA BJ)는 2016. 11. 4. 'AO'이란 닉네임으로 AA에 접속하여 자신의 운영하는 방의 채팅창에 원고를 향해 "야 이새끼야 새낀지 년인지 모르겠는데, AD이라는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고, 씨발 AD 대화 좀 해보자, 너 나 못하면 병신이라 고, 너 허언증 있냐, 고소하는 AD으로 바꿨더라. 돈뜯어먹지말고"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7. 4. 18.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7고약3369).

너. 피고 Q

피고 Q은 2017. 10. 29. 'AP'란 닉네임으로 AA에 접속하여 자신의 운영하는 방송에서 "어그로 끌지 마라. 어그로는 니가 끌었잖아 좆 같은년아, 내가 먼 어그로 끌어 개 좆 같은년이 헛소리 삐약삐약(중략) 시발새끼 영어를 하고 있어, 계속 욕하고 있어라, 시발놈이(중략) 년 징역밥 좀 먹어야겠다. 좆같은새끼"라며 방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6. 18.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8고약8765).

더. 피고 R

피고 R은 2017. 10. 23. 'AQ'란 닉네임으로 원고가 방송 중인 AA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AD 이 하꼬 캐 새키 어그로 지대로 끄네"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음 날 'AQ'란 닉네임으로 원고가 방송 중인 AA에 접

속하여 채팅창에 "너 인격 지켜주려고 하는 거다 이놈마, 답 없는 새키, 답 없는 새키"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2018. 7. 2.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8고익2683).

러. 피고 S

피고 S은 2016. 5. 2. 'AR'이란 닉네임으로 원고가 방송 중인 AA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원고를 지칭하며 "X 죽여버릴까?, 잦 같은 세기가, 잦아, 임마 까불지마"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8. 24.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6고약 19951).

머. 피고 T

피고 T은 2016. 10. 14. 'AS'란 닉네임으로 닉네임 'AT'이 운영하는 방송 방에 입장하여 있던 중 약 10분동안 원고를 향해 "좀 닥치라고, 개 같은게 나대네, 입닥치고 찌그러져 있어, 밥아, 저새끼 대구 사는 새끼네, 형이 대구로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2017. 3. 1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7고약1.75).

버. 피고 U

피고 U은 2016. 5. 16. 원고가 방송 중인 AA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원고를 지칭하여 "멍청한 세캬"라고 게시하는 등 6회에 걸쳐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8. 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6고 약7472).

서. 피고 V

- 1) 피고 V은 2015. 7. 24. 평소 W에서 사이가 좋지 않은 원고의 개인방송에 접속하여 "꽃뱀 짓하며 왜 사냐?"라고 게시하고, 원고에게 주소를 알려달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어 원고에게 개인방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2015. 7. 25. 피고 Vol 운영하는 개인방송에 원고가 입장한 것을 알고 개인 방송 제목을 "AD비제이만나러대구고고현피"라고 기재하고, 2015. 8. 3. 원고로 인하여 더 이상 개인방송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휴대전화로 "너, 내가 정말 법은 떠나서 가만히 안 나둔다. 이번에는 같이 죽자"는 등의 총 22개의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1. 25.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5고약15635).
- 2) 피고 V은 W 싸이트에 'AU'란 닉네임으로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해 오던 중 같은 사이트에서 방송BJ로 활동하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 방송 중 욕을 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고소를 해오자 2015. 8. 3. "AD이가 죽던지 내가 죽던가 AD를 죽여버려야 쓰것어 AD이가 사람약을 살살 올려가면서 이씨발놈이 개새끼가 여자 시켜서 녹음하고 말이야 나도 녹음해놨어 AD가 씨발 그 새끼가 W 대통령이야? AD 잘들어라 너도 사람들한테 욕했잖아 꽃뱀짓했자나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이 씹새끼야 재떨이 AV에서 천원주고 샀거든 AD이 개 개새끼야 먼데 이새끼 사기꾼이야"라고 방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5. 9. 8.까지 5회에 걸쳐 자신의 방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11. 17.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2015고약12690).

[인정근거] 갑 제1, 2, 4, 5, 8 내지 19, 21, 22, 25, 26,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시청 중인 인터넷방

송에서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언사를 하거나 경멸적인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추인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와 의도, 피고들이 게시한 글 또는 발언의 내용과 표현방법, 분량과 횟수, 원고와 피 고들의 연령, 직업, 피고들의 불법행위 이후 원고의 태도,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벌금 액수의 약 1/3에 상 당하도록 정함이 타당하다(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2017. 12. 26.부 터 2018. 9. 21.까지 불면증, 우울장애 등으로 신경외과에서 약물을 처방받았고, 2018. 9. 17. 수면제를 과 다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시도를 한 사실도 있으며, 2018. 9. 28.부터 2019. 6. 7.까지 4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2019. 8. 17.부터 2020. 10. 12.까지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장애, 불면 증, 식욕부진, 정서적 불안정, 대인관계회피 등의 증상으로 8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고 주장하는바, 갑 제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7. 12.경부터 2020. 10.경까지 정 신과 증상 치료를 위한 약물 처방을 받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정신과적 증상이 피고들의 모욕행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현된 것임 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지 않는다). 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피고 B 40만 원, 피고 C 10만원, 피고 D 15만 원, 피고 E 15만 원, 피고 F 10만 원, 피고 G 10만원, 피고 H 15만원, 피고 15만원, 피고[15만원, 피고 K 10만 원, 피고 L 15만 원, 피고 M 15만 원, 피고 N 10만 원, 피고 0 30만 원, 피고 P 10만원, 피고 Q 15만 원, 피고 R 10만 원, 피고 S 10만 원, 피고 T 30만 원, 피고 U 30만 원, 피고 V 30만 원으로 각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29.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30.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는 1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 13.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은 1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19.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F은 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29.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F은 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29.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G는 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 17.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H는 1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27.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I은 1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 1.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J는 1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29.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K 은 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27.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L은 1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28.부터 2021. 1. 8.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M는 15만 원과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27.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N은 10만원과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29.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0은 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27.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P는 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21.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Q은 1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5.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R은 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2. 14.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S은 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 3.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T은 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19.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피고 U은 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 15.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V은 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2. 17.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형주